

FTA BRIEF

Vol. **05**
July 2024

사례를 통해 이해하는

누적기준과 충분가공원칙의 관계



한국원산지정보원

한국원산지정보원

- ☑ 한국원산지정보원은 본격적인 Mega-FTA 시대를 맞이하여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정보 수집·분석과 활용 및 검증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확보 및 국가의 관세행정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있는 전문 기관입니다.
- ☑ 한국원산지정보원은 「FTA BRIEF」를 통해 자유무역협정(FTA)과 원산지 관련 수집 정보와 주요 이슈를 분석하여 기업들이 FTA 원산지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기간행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원산지정보원 사업





* 사진 출처 : 한국무역신문

EU 주도 공급망 실사법, CSDDD 발효

- ☑ 인권·환경 리스크에 대한 실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공급망 실사지침(CSDDD,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은 금년 7월 25일부터 발효되었으며, 향후 EU 회원국은 2년 내 해당 제도에 대한 세부 지침을 자국법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 ☑ EU 집행위원회는 각국 기업이 실사 의무를 이행하는 방법 등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며, 적용기업은 공급망 실사 의무를 기업 정책에 반영 및 이행 결과를 고시해야 한다.
- ☑ 본격적인 시행은 2027년부터 2029년에 걸쳐 기업 규모별로 순차 적용될 전망이며, 정부는 기업들의 대응력 확보에 적극 지원할 계획에 있다.



한-미 FTA 일부 섬유 직물 원산지 기준 개정, 내달 1일 국내 발효



- ☑ 구리암모늄 레이온 직물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기준 개정안이 다음달 1일 발효될 예정이다. (8/1 발효 예정)

* 구리암모늄 레이온 직물 : 목화씨에 붙어 있는 잔탈섬유(면리터)를 재생하여 만든 것으로 촉감과 광택이 우수하여 고가의 드레스, 셔츠, 안감에 쓰이는 고급 직물

* 사진 출처 : 데일리안(Dailyan)

- ☑ 이번 개정안 발효를 통해 역외산 구리암모늄 레이온사를 사용하여 국내 제조 후 미국 수출 시 한국산으로 인정돼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12.0 ~ 14.9% → 0%)
- ☑ 이에 대한 우리 섬유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례를 통해 이해하는 누적기준과 충분가공원칙의 관계



- FTA 이행 장기화로 협정별 원산지규정 차이 고려 않은 관성적 규정 적용 및 원산지 판정 위험 높아져
- 특히, 협정상대국 재료를 누적기준 적용하여 원산지 판정 시 불인정공정(충분가공원칙) 위배 여부 검토하지 않는 사례 잦아
- 누적기준과 충분가공원칙의 관계를 협정별 사례를 통해 이해를 돕고자 함

[글_윤호성 한국원산지정보원 정책연구팀장]

1. 개요



현재 우리나라는 21개 협정이 발효되어 있으며, 원산지규정은 미주형, EU형, 아세안형 등으로 크게 3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 3개 유형의 원산지규정은 품목별원산지기준 설정·표현 방식, 원산지규정(일반기준 및 특례기준) 적용 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어, 원산지 지위 획득 여부 판정에 작거나 큰 영향을 미친다.

● 원산지규정의 구분과 종류

구분		종류	
일반기준	공통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전생산기준 • 역내생산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분가공원칙 • 운송요건
	특례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적기준 • 최소허용수준 • 중간재 • 대체가능물품 • 간접재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속품·예비품·공구 • 소매 포장·용기 • 운송 포장·용기 • 세트물품
품목별원산지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번변경기준 • 가공공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가가치기준

원산지규정 적용에 있어 우려되는 사항은 협정 이행 장기화¹⁾로 원산지규정의 각 조항의 세부적인 의미나 내용, 협정별 차이를 무시하고 일반적인 내용만을 설명하는 자료가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료는 기업으로 하여금 각 규정의 의미 및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관성적으로 원산지규정을 적용하여 원산지를 판정하게 할 우려가 있다. 이에 금번 글을 통해 원산지규정의 의미 및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하며, 특히 누적기준 적용시 충분가공원칙과의 관계에 대한 오인사항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1) 금년 우리나라는 2004년 한-칠레 FTA 시작으로 FTA 이행 20주년을 맞이하였다.

2. 누적기준과 충분가공원칙



(1) 해당 규정의 개요

누적기준은 협정상대국의 재료를 수출당사국의 재료로 인정하는 특례규정으로, 품목별원산지기준 충족이 용이해진다.²⁾ 해당 특례규정을 적용한 원재료는 원산지(수출당사국)재료로 인정되어 세번변경기준 적용시 세번변경 유무를 확인하지 않으며, 부가가치기준 적용시 해당 재료를 원산지재료비에 계상할 수 있다.³⁾ 우리측 기발효 21개 협정에서는 모두 재료 누적을 인정하고 있다.

● 누적기준 적용 예시

- 최종제품인 클러치(제8708.93호)를 한국에서 생산하여 베트남으로 수출
- 한-베트남 FTA PSR : CTH or RVC40
 - 연번 2, 6, 7, 8 원재료는 누적기준을 적용하여, 세번변경유무를 확인하지 않으며, 부가가치기준 적용시에는 원산지재료비에 계상할 수 있어 품목별 원산지기준 충족이 용이함
 - 반면 해당 원재료를(연번 2, 6, 7, 8) 역외산 사용시,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할 수 없으며, 최소허용수준을 적용하여도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42.5%). 또한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여도 역내부가가치는 37%로 원산지를 충족할 수 없음

제8708.93호(클러치) 원재료 투입 내역(클러치 FOB 가격 : \$500)					
연번	품명	HS 코드	가격(\$)	원산지	원산지 지위
1	플라이 휠	HS 8483.50	65	미국	비원산지
2	클러치 디스크	HS 8708.93	100	베트남	원산지(누적기준)
3	압력판	HS 8708.93	50	한국	원산지
4	클러치 하우징	HS 8708.93	90	한국	원산지
5	클러치 스프링	HS 7320	20	한국	원산지
6	클러치 페달	HS 8708.93	30	베트남	원산지(누적기준)
7	리리스 레버	HS 8708.93	70	베트남	원산지(누적기준)
8	클러치 케이블	HS 8708.93	50	베트남	원산지(누적기준)

다음으로 충분가공원칙은 수출당사국에서 최종물품 생산시 충분한 공정을 거쳐야만 원산지상품으로 인정하는 기본원칙이다. 「충분한 공정」이란 물품의 실질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협정은 「충분한 공정」으로 볼 수 없는 「불인정공정 또는 단순공정」을 규정하고 있다.

2) 우리측 기협정에서 누적기준 적용시 누적시킬 수 있는 생산요소는 재료와 공정이 있으며, 본 글에서는 재료 누적만으로 한정한다.

3) 다만 누적기준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품목별원산지기준이 충족하면 누적기준을 사용할 필요는 없다.

● **우리측 21개 협정 불인정공정 규정 현황**

불인정공정 규정 협정	불인정공정 미규정 협정
칠레, 싱가포르, EFTA, 아세안, 인도, EU, 튀르키예, 페루, 호주, 중국, 베트남, 콜롬비아, 뉴질랜드, 중미, 영국, RCEP, 캄보디아, 이스라엘, 인도네시아	미국, 캐나다

* 한-미 FTA는 품목별원산지기준에서 제1류~제40류 품목 단순희석으로 인한 생산은 원산지 불인정 특정 물품이 「품목별원산지기준」(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 등)을 충족 하더라도 그것이 단순한 공정(불인정공정)의 수행 결과라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하지 않는 규정이다.

● **불인정공정 사례**

투입 원재료	가공공정	최종제품
소(제0102호)	도축	소고기(제0201호)
멸치(제0301호)	건조	마른멸치(제0305호)
페니실린(제3003호)	소매포장	소매포장 페니실린(제3004호)

(2) 누적기준과 충분가공원칙 관계에 대한 오인 사항

FTA 활용기업은 최종제품 생산에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하였을 경우 역내 생산공정이 충분가공원칙(불인정공정)위배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더불어 한국산 원산지재료를 사용하였을 경우 불인정공정을 수행하여도 원산지가 인정됨도 인지하고 있다.

다만, 협정상대국 재료를 사용하여(누적기준을 적용) 최종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불인정공정 위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이렇게 누적기준과 충분가공원칙의 관계를 오인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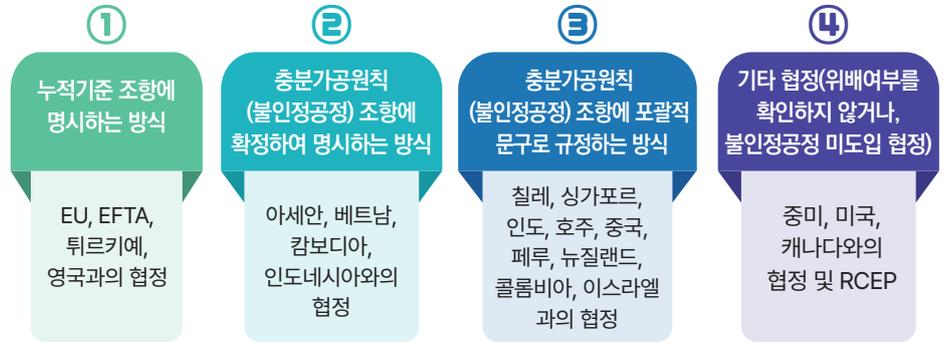
먼저 FTA 관련 책자나 설명자료에서 충분가공원칙(불인정공정)을 설명시 역외산(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최종제품을 생산할 경우 불인정공정에 해당하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설명한다. 이에 협정상대국 재료 사용시 불인정공정 위배여부를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오인한다. 협정상대국 재료는 누적기준을 적용하여 원산지재료로 인정(간주)하여 원산지를 판정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협정에서 원산지상품 생산방식은 완전생산, 불완전생산, 원산지재료 생산 등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어, 원산지재료 생산품에 대해서는 불인정공정을 수행하더라도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오인을 가중 시킨다.

정리하면, 최종물품 생산시 비원산지재료나 협정상대국 재료를 사용한 경우 충분가공원칙(불인정공정) 위배 여부를 확인해야함을 유의해야 한다.

(3) 협정별 누적기준과 충분가공원칙의 관계 명시 현황

우리측 기발호 21개 협정에서 협정상대국 재료 사용시에도 충분가공원칙(불인정공정) 위배여부를 확인해야 함을 규정하는 방식은 크게 아래의 4가지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 협정별 조항 명시 유형



① 누적기준 조항에 명시하는 방식

EU, EFTA, 튀르키예, 영국과의 협정에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누적기준 조항에 협정 상대국 재료를 제6조에 규정된 이상의 공정을 수행한 경우 누적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제6조가 충분가공원칙(불인정공정)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 협정상대국 재료를 사용하여(누적하여) 상품을 생산하더라도 불인정공정을 넘어서는 공정을 수행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한-EFTA FTA는 협정상대국 재료가 불인정공정에 해당하는 공정을 수행하여 협정 상대국으로 재수출될 경우 최초의 원산지를 유지함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다.

한-EFTA (제3조 누적기준)

- 1.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부속서의 의미 내에서 **제6조에 규정된 것 이상의 작업이나 가공을 거친 경우**, 타방 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재료는 일방 당사국의 원산지 재료로 간주한다.
- 2. 이 부속서의 의미 내에서 일방 당사국에서 타방 당사국으로 수출되어 타방 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은 동일한 **상태로 재수출되었거나 제6조에 규정된 것 이상의 작업이나 가공을 거치지 아니하고 재수출된 경우 그 원산지를 유지한다.**

한-EU, 한-튀르키예 (제3조 누적기준)

- 제2조에도 불구하고, 다른 쪽 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재료를 결합하여 당사자 내에서 제품이 획득된 경우, **그러한 제품은 그 당사자가 원산지로 간주된다. 다만, 수행된 작업 또는 가공이 제6조에서 언급된 공정을 넘어서는 경우에 한정한다.** 그러한 재료는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쳤을 필요는 없다.

한-영 (제3조 누적기준)

- 1. 제2조에도 불구하고, 다른 쪽 당사국이나 EU를 원산지로 하는 재료를 결합하여 당사국 내에서 제품이 획득된 경우, 그러한 제품은 그 당사국이 원산지로 간주된다. **다만, 수행된 작업 또는 가공이 제6조에서 언급된 공정을 넘어서는 경우에 한정한다.** 그러한 재료는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쳤을 필요는 없다.
- 2. 제2조에도 불구하고, EU에서 수행된 작업 또는 가공은 취득된 상품이 그에 후속하는 작업 또는 가공을 당사국 내에서 거쳤을 경우 그 당사국 내에서 수행된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그 당사국에서 수행된 작업 또는 가공이 제6조에서 언급된 공정을 넘어서는 경우에 한정한다.***

* 제3조에 규정된 EU와의 누적은 이 협정의 발효부터 3년 후에는 적용이 중단될 것이다. 이 협정의 발효일 후 2년 내에 양 당사국은 이 조의 검토를 개시한다.

㉔ **충분가공원칙(불인정공정) 조항에 확정하여 명시하는 방식**

아세안,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에서는 충분가공원칙(불인정공정) 조문 제1항에서 불인정공정을 열거하고, 제2항에서 협정상대국의 원산지상품이 수출당사국에서 제1항에 규정된 불인정공정을 수행하고 다시 수출되는 경우 최초 원산지를 유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협정상대국 재료를 사용하여 불인정공정의 결과로 상품이 생산된 경우 원산지가 한국산으로 인정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 ● **한-아세안 FTA <제8조 불인정 공정>**

1. 이 부속서의 어떠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공정이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 단독 또는 결합으로만 수행된 경우, 그 상품은 당사국 영역의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 가. 운송 혹은 저장 중에 상품을 우수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한 보존 공정
 - 나. 포장의 변경, 포장의 해체 및 조합
 - 다. 먼지, 산화물, 기름, 페인트 또는 그 밖의 막의 단순한 세척, 세정, 제거
 - 라. 단순한 도장 및 광택 공정
 - 마. 곡물 및 쌀의 탈각, 부분 또는 전체 표백, 연마 및 도정
 - 바. 당류 채색 또는 각설탕 공정
 - 사. 단순한 껍질 벗기기, 씨제거, 또는 탈각
 - 아. 연마, 단순한 분쇄 또는 단순한 절단
 - 자. 채질, 선별, 구분, 등급 분류, 등급화, 매칭
 - 차. 병, 캔, 플라스크, 가방, 케이스, 상자에 단순히 담기, 카드 또는 판자에 고정하기 및 모든 다른 단순한 포장 공정
 - 카. 표식, 라벨, 로고 및, 상품 또는 그 포장에 식별 표지와 같은 것의 첨부 또는 인쇄
 - 타. 다른 종류간이건 아니건 생산품의 단순한 혼합
 - 파. 완전한 물품을 구성하기 위한 그 부품의 단순한 조합 또는 생산품을 부품으로 해체하기
 - 하. 단순한 실험 또는 측정
 - 거. 동물의 도축
 - 1) "단순한"이란 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된 특별한 기술, 기계, 기기 또는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활동을 말한다.
 - 2) "단순한 혼합"이란 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된 특별한 기술, 기계, 기기 또는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활동을 말한다. 그러나 단순한 혼합은 화학반응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 3) "도축"이란 동물의 단순한 도살 및 이에 연이어 이루어진 저장과 운송을 목적으로 한 절단, 냉장, 냉동, 염장, 건조 또는 훈제와 같은 과정을 의미한다.
2. 어느 당사국 영역의 원산지 상품, 수행된 공정이 제1항에 규정된 이상의 공정을 수행되지 않은 다른 당사국으로 수출되었을 때 처음의 원산지 지위를 유지한다.

③ 충분가공원칙(불인정공정) 조항에 포괄적 문구로 규정하는 방식

칠레, 싱가포르, 인도, 호주, 중국, 페루, 뉴질랜드, 콜롬비아와의 협정에서는 포괄적 문구로 규정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다. 충분가공원칙(불인정공정) 조항의 제1항에서 원산지규정의 어떠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단순공정 수행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원산지규정의 누적기준에도 불구하고 역내에서 충분가공원칙에 위배될 경우 원산지 지위가 부여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 한-페루 FTA <제3.5조 불인정공정>

1. 이 장에 따른 요건이 충족되는지와 관계없이, 다음의 공정은 원산지 상품 지위 부여의 목적상 불인정 공정으로 간주된다.

가. 운송되고 보관되는 동안 상품이 양호한 상태로 보존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공정

나. 포장상태의 변경 또는 포장의 해체 또는 조립

다. 세척, 세탁, 먼지·녹·기름·페인트 또는 그 밖의 막의 제거

라. 직물의 다림질 또는 압착

마. 단순한 페인팅 그리고 광택 공정

바. 곡물 및 쌀의 탈각, 부분 또는 전체 표백, 연마 및 도정

사. 병·캔·플라스틱·가방·케이스·상자에 단순히 넣기, 카드 또는 판에 붙이기, 그리고 그 밖의 모든 단순한 포장 공정

아. 다른 종류인지와 관계없이, 제품의 단순한 혼합

자. 완전한 물품을 구성하기 위한 부품의 단순한 조립 또는 상품의 부품으로의 분해

차. 동물의 도살

카. 가호부터 차호까지의 규정에 명시된 둘 이상의 공정의 조합

2. 해당 상품에 행해진 공정이 제1항에 따른 의미에서의 불인정 공정으로 간주되는지를 결정할 때에는, 그 상품에 대해 당사국에서 행해진 모든 공정이 함께 고려된다.

3. 이 조의 목적상

가. 단순한이란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특별한 기술이나 특별히 생산 또는 설치된 기계, 도구 또는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작업을 말한다.

나. 단순한 혼합이란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특별한 기술이나 특별히 생산 또는 설치된 기계, 도구 또는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작업을 말하나, 화학반응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리고

다. 화학반응이란 분자 내 결합이 깨지고 새로운 분자 내 결합 생성에 의하거나 분자 내 원자의 공간배열을 변경함으로써 새로운 구조를 가진 분자가 되는 공정(생화학 공정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④ 기타 협정(위배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불인정공정 미도입 협정)

한-중미 FTA는 충분가공원칙 제1항에서 불인정공정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당사국들의 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 생산된 원산지상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RCEP은 제3.6조 「최소 공정 및 가공」에서 비원산지재료에 대해서만 불인정공정 위배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⁴⁾ 끝으로 미국, 캐나다와의 협정에서는 충분가공원칙을 도입하지 않고 있다.

이들 협정은 협정상대국 재료를 사용하여 최종제품 생산시 불인정공정 위배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으며, 품목별원산지기준 충족시 원산지가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된다.⁵⁾

● 한-중미 FTA <제3.5조 불인정공정>

1. 이 장에 따른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의 공정은 원산지 상품 지위 부여를 위한 불인정 공정으로 간주된다.
 - 가. 운송 및 보관 중 상품이 양호한 상태로 보존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공정
 - 나. 포장의 변경 또는 포장물의 해체 또는 조립
 - 다. 세탁, 세척, 먼지·녹·기름·페인트 또는 그 밖의 막의 제거
 - 라. 방직용 섬유의 다림질 또는 압착
 - 마. 단순한 페인팅 및 광택 공정
 - 바. 곡물 및 쌀의 탈각, 부분 또는 전체 표백, 연마 및 도정
 - 사. 병, 캔, 플라스크, 가방, 케이스, 상자에 단순히 넣기, 카드 또는 판에 붙이기, 그리고 그 밖의 모든 단순한 포장 공정
 - 아. 다른 종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의 단순한 혼합
 - 자. 완전한 물품을 구성하는 물품 부품의 단순한 조립 또는 제품의 부품으로의 분해
 - 차. 동물의 도살
 - 카. 건조, 염장(또는 염수장), 냉장 또는 냉동
 - 타. 상품 또는 그 포장에 포장, 라벨, 로고 및 이와 유사한 그 밖의 구별표시의 부착
 - 파. 과일, 견과류 및 채소에 대한 탈피, 씨 제거 및 탈각
 - 하. 연마, 단순 분쇄 또는 단순 절단
 - 거. 감별, 체질, 선별, 분류, 등급화
 - 너. 가호부터 거호까지 규정된 둘 이상의 공정의 조합
2. 이 조의 규정은 당사국들의 원산지 재료로 생산된 원산지 상품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이 조의 목적상
 - 가. 단순한이란 특별한 기술이나 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된 기계, 기기 또는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활동을 말한다.
 - 나. 단순한 혼합이란 특별한 기술이나 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된 기계, 기기 또는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활동을 말한다. 다만, 화학 반응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4) 다만 RCEP 협정은 관세차별품목이 원산지재료만으로 생산된 경우 제2.6조의 원산지결정 방법을 따라야 한다.

5) 협정상대국 재료나 상품을 수입하여 별도의 가공 없이 재수출하여도 원산지상품으로 인정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협정상대국 재료나 상품을 사용하여 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은 이루어져야 한다.

RCEP <제3.6조 최소 공정 및 가공>

이 장의 어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공정이 상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비원산지 재료에 대하여 수행된 경우 그 상품에 원산지 상품의 지위를 부여하기에 불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으로 간주된다.

- 가. 운송 또는 보관 목적상 상품이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보존 공정
- 나. 운송 또는 판매를 위한 상품의 포장 또는 전시
- 다. 감별, 체질, 선별, 분류, 연마, 절단, 쪼개기, 분쇄, 구부리기, 감기 또는 풀기로 구성되는 단순한 가공
- 라. 상품 또는 그 상품의 포장에 마크, 라벨, 로고 또는 그 밖의 유사한 구별 표시의 부착 또는 인쇄
- 마. 상품의 특성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으면서 물이나 다른 물질로 단순 희석
- 바. 제품의 부품으로의 분해
- 사. 동물의 도살
- 아. 단순한 페인팅 및 광택 공정
- 자. 단순 탈피, 씨 제거 또는 탈각
- 차. 다른 종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상품의 단순한 혼합
- 카. 가호부터 차호까지에 언급된 둘 이상의 공정의 조합

(4) 원산지지위 획득여부 관련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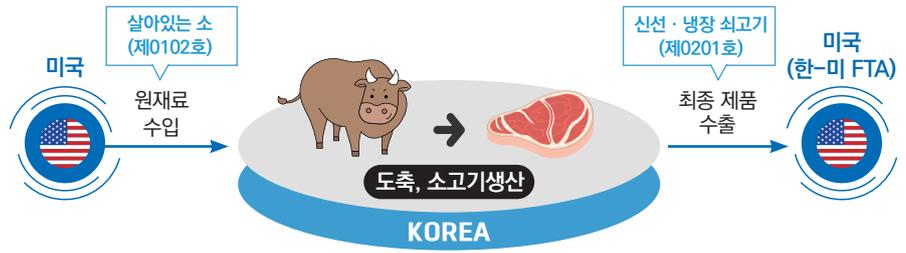
앞서 설명된 협정별 누적기준과 충분가공원칙간의 관계를 각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례 1



원산지 인정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수코팅”은 불인정공정에 해당하지 않아, 21개 모든 협정에서 누적기준적용 가능함. 이에 한국산 원산지 인정 가능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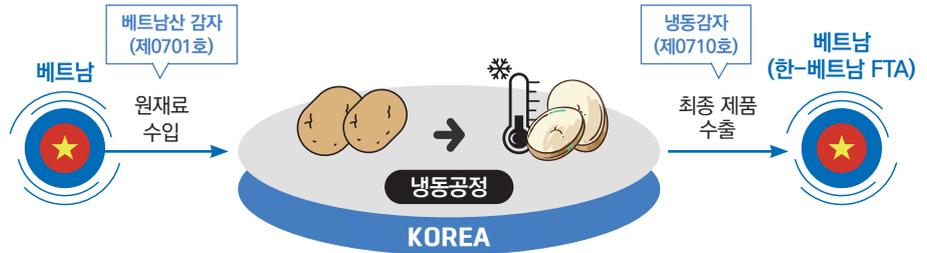
사례 2



원산지 인정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산 소(제0102)는 누적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음 - 한-미 FTA는 충분가공원칙을 도입하지 않았으며, 완전생산 영역이 양당사국으로 확장되어 있어 한국산 원산지 인정 가능
-----------	---

* 일반적으로 동물의 도축(도살)은 불인정공정에 해당하므로 동물의 도축(도살)통해 얻은 생산품은 원산지를 인정받을 수 없으나, 한-미 FTA는 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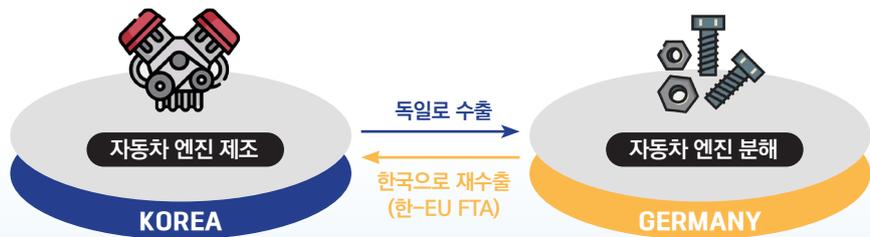
사례 3



원산지 인정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적기준 적용 불가 • 한-베트남 FTA 제3.7조상 “냉동”은 불인정공정에 해당하므로 한국산 원산지 인정 불가
-----------	--

* 일반적으로 냉동, 건조, 탈각, 탈피, 씨 제거, 혼합 등은 불인정공정에 해당하므로 원산지를 인정받을 수 없음

사례 4



원산지 인정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적기준 적용 불가 • 한-EU FTA 제6조상 “분해”는 불인정공정에 해당하여 독일산 원산지 인정 불가
-----------	--

* 일반적으로 분해는 불인정공정에 해당하므로 원산지를 인정받을 수 없음

사례 5



원산지 인정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적기준 적용 불가 • 한-중 FTA 제3.7조상 “단순조립”은 불인정공정에 해당하여 한국산 원산지 인정 불가
-----------	---

* 일반적으로 단순조립은 불인정공정에 해당하므로 원산지를 인정받을 수 없음

3. 맺음말



지금까지 누적기준과 충분가공원칙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며, 일반적으로 협정상 대국 재료를 사용하더라도 불인정공정 위배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정별 누적기준 및 충분가공원칙 규정 내용에 따라 협정별 원산지 인정여부는 달라지므로 활용하자고 하는 협정의 각 조항 명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충분가공원칙에서 불인정공정을 열거하고 있으나, 각 불인정공정의 의미 및 적용 범위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협정상대국과 이견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협정별 원산지규정에 대한 꼼꼼한 의미 파악 및 검토가 필요하며, 필요시 관세청 등 FTA 이행·협상 정부기관의 질의 회신을 받아 보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FTA BRIEF

Vol. 05 | July 2024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ISSN 3022-7984